에스케이하이닉스㈜ 기업지배구조헌장

전 문

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함)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어, 궁극적으로 최고의 반도체 전문회사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첩경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.

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 보장,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,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, 주주·고객·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한다.

I. 주 주

1. 주주의 권리

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, 회사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,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,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권리와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.

② 합병·자본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하에 결정된다.

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,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.

④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.

2. 주주의 공평한 대우

① 주주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,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.

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.

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,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.

3. 주주의 책임

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.

II. 이 사 회

1. 이사회의 기능

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며,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.

② 이사회는 관련법령·정관·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,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2. 이사회의 구성

① 회사는 이사회에서 다양한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6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. 다만,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, 기타 법령,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3. 이사회의 운영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,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, 운영한다.

② 회사는 이사회 회의의 경과 과정, 중요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4. 이사의 자격

① 이사는 최고의 정직성, 건전한 윤리의식과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, 회사, 회

사의 전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.

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, 회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,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사외이사는 산업계·금융계·학계·법조계·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,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경영진과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
④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,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.

5. 이사의 선임

① 이사는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.

② 사내이사 후보는 회사의 집행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다.

③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.

④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.

6. 사외이사의 역할·권한·의무

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, 지원하며,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.

②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, 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회의에 참석한다.

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,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또한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④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.

7. 이사의 의무와 책임

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핵심가치 추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

해야 한다.

②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,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 또한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범·규정을 준수한다.

③ 이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, 의결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. 그러나,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④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유치하고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⑤ 이사는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하여야 한다. 또한, 이사 자신의 개인적·영업적·직업적 이해에 직·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
8. 평가 및 보상

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.

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는 매년 이사회 및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, 그 결과를 차기 연도의 이사회 운영의 개선과 보상에 활용한다.

9. 이사의 교육

① 회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, 회사 경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.

② 회사는 전항의 교육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.

Ⅲ. 감 사 기 구

1. 감사위원회

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,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③ 감사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이사, 경영진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감사위원회는 그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주요 활동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,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한다.

2. 외부감사인

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 답변한다.

Ⅳ. 이해관계자

1. 회사는 임직원·고객·협력사·채권자·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, 성실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2.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,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에 노력한다.
3.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
Ⅴ. 공　　시

1.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2.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
2009년 11월 27일